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9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박대출 • 권영세 • 이종배

송석준 • 이종욱 • 강승규

김태호 · 김상훈 · 김은혜

정연욱 · 신성범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1년 7월 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임. 또한 신용카드나 직·선불카드로 지출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 특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만큼 노후자동차의 교체를 지원하는 특례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한시적 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또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23년 12월 31일에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4년 12월 31일 까지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개별 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함(안 제109조의2).
- 나.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2019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 액 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신 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 나.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 금액 합계액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 용자동차를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 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 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 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 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에 대해서는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u>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u>(제126조의2제2항제 6호 관련)

1. 제126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표 왼쪽 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의 비교 조건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 란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제2호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한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계산 시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차감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 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 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 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 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 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 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 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 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 계액) × 100분의 80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 용분
-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 사용분
-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 분
-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 용분
- 2)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 용분
- 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 용분
-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	<u>2013년</u>
<u>년 12월 31일</u> 이전에 신규등록	12월 31일
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	
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	
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	
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	
자동차"라 한다)를 <u>2019년 6월</u>	<u>2023년 12월</u>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	31일
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	
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	
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	
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	
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	
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	

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 ⑤ (생 략)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
과 같음)
②
1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서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 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 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 2. ~ 5. (생략)
-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 다. (생 략)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024
<u>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u>
<u>0일</u>
<u>100분의 80</u> -
2. ~ 5. (현행과 같음)
6
2024년 1월 1일부
터 2024년 12월 31일
<u>기 2024년 12년 51년</u>
·.
가. ~ 다.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 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 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 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 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금액의 합계액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 년 6월 30일까지의 신용카 드등사용금액 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 년 6월 30일까지의 신용카 드등사용금액 합계액의 10 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 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나. 2024년 7월 1일부터 2024 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 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에 서 2023년 7월 1일부터 20 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 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 다) × 100분의 10

③ ~ ⑩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